

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3. 6. 30.(2003. 6. 30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III. 근거법령 :

- 폐기물관리법 제12조, 제13조, 제15조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

IV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-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음식물쓰레기 감량·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
 -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함 (안 제7조 제3호)
- 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
 -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,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정함. (안 제11조제5항 내지 제6항)
-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화
 - 다른 자치단체의 음식물처리를 우리시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

하는 경우, 그 계약내용을 민간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우리시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 (안 제12조제5항)

-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,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고자 함. (안 제12조제6항)

○ 기타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개정

3. 검토의견

○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와 수수료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

○ 「음식물쓰레기」를 「음식물류폐기물」로 용어가 변경되었고,

○ 안 제7조 제3호를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·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,

○ 안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시 전용 봉투사용 쓰레기총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부과 징수토록 하고,

○ 안 제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처리를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민간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우리 시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,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,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